

14. 金融機關의 延滯貸出金에 관한 特別 措置法施行令改正令(案)立法豫告

재정경제원 공고 제 1997-102호 1997. 10. 30

주요 골자

- 가.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최저경매가격 평가기관을 한국감정원 외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도 가능하도록 확대
- 나. 한국감정원의 전문성을 감안 공장, 어업권, 광업권 등 “특수물건”은 현행대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

개정 이유

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최저 경매가격 평가기관을 한국감정원 외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도 가능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.

주택회보